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인터넷 이용자에게 개선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민원 접수·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제고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청장의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의무(안제3조)
- 구청장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의무(안제10조)
- 구청장과의 대화방, 참여마당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안제14조, 안제15조제1항)
- 의견 수렴 창구 운영을 위하여 웹 메일 가입권장 및 차등화 된 마일리지 부여
(안제15조 제3항)
-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안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에서 정보화 촉진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에 따라 2000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안된 것이며, 서울특별시 12개 자치구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 **개별 조문을 살펴본 바**

- 안제9조 내지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안은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통합 민원 창구란을 이용하면 「부동산민원발급, FAX민원, 지방세 인터넷납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대형폐기물접수, 전세자금대출 신청, 그린파킹신청,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인터넷 민원의 처리 확산 추세에 맞춘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인터넷 민원처리건수는 13,608건이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은 80,783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 안제10조 제2항에서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처리공개에 대한 통제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제15조 제3항과 안제15조 제4항의 무료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 마일리지 도입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행이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찾고 이용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도입 방안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안제2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 대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제21조의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은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일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 국제교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중국교포 등이 다수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어 중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21조 제3항에서 “담당부서를 지정·관리” 한다고 정하였는바 업무의 성격상 문화체육과로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공보·문화 담당부서에서 관리”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2. 21

보고자 : 김 찬 재